

# 계약관리업무절차 개정내용

현 행	개 정
<p><b>제11조 (발주대상분야)</b>                      회사가 물품구매 이외에 발주할 수 있는 사업의 유형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.                      다만, 개념 및 기본설계 등 안전성, 신뢰성, 기술력 및 품질의 확보와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제외한다.                      1. ~ 7. (생략)</p> <p><b>제45조 (물품구매계약 대상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1. ~ 5.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100조의 계약의 특례와 관련하여 구매대상 물품의 추정가격(VAT별도)이 300만원 이하의 소액물품구매 시 구매요구부서에서는 별지 제28호서식(소액구매품의서)를 이용하여 복수의 견적서를 첨부하여 구매하여야 하며, 자산등재 관련 제반사항, 검수 및 대가지급 등을 직접 처리한다. 다만 특수지역 사정 및 희귀품 등 정상적인 계약절차에 의하여서는 적기 조달이 곤란한 긴급 소요 물품을 구매할 경우 복수견적서 첨부를 아니할 수 있으며, 복수 견적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구매요구부서에서 업체를 선택할 수 있다.</p> <p><b>제115조 (발주계획 품의서 작성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② 구매요구부서는 「계약규정」 제100조제2항에 따라 계약규정과 상이한 수주계약조건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, 그 내용을 계약특수조건에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③ (생략)</p> <p><b>제116조 (발주계획 품의서의 검토 및 협조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 (생략)</p>	<p><b>제11조 (발주 대상분야)</b>                      회사가 물품구매 이외에 발주할 수 있는 사업의 유형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. 다만, 개념 및 기본설계 등 안전성, 신뢰성, 기술력 및 품질의 확보와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제외한다.                      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<b>제45조 (물품구매 대상분야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1. ~ 5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5조의2 소규모 계약의 직접집행과 관련하여 구매대상 물품의 추정가격(VAT별도)이 500만원 이하의 소액물품구매 시 구매요구부서에서는 별지 제28호서식(소액구매품의서)를 이용하여 복수의 견적서를 첨부하여 구매하여야 하며, 자산등재 관련 제반사항, 검수 및 대가지급 등을 직접 처리한다. 다만 특수지역사정 및 희귀품 등 정상적인 계약절차에 의하여서는 적기 조달이 곤란한 긴급 소요물품을 구매할 경우 복수견적서 첨부를 아니할 수 있으며, 복수 견적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구매요구부서에서 업체를 선택할 수 있다.</p> <p><b>제115조 (발주계획 품의서 작성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② 구매요구부서는 규정 제100조제4항에 따라 계약규정과 상이한 수주계약조건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, 그 내용을 계약특수조건에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b>제116조 (발주계획 품의서의 검토 및 협조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
<p>② 구매요구부서는 수주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처 요구사항의 이행, 사업정보의 비밀유지, 사업완료기한의 준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<u>계약규정 제100조(계약의 특례) 제4항</u> 또는 <u>제5항</u>에 따라 불가피하게 계약의 방법(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)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발주계획품의서에 발주처가 승인한 하도급자 승인공문 또는 하도급자 목록 등의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.</p>	<p>② 구매요구부서는 수주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처 요구사항의 이행, 사업정보의 비밀유지, 사업완료기한의 준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<u>규정 제 100조제2항</u> 또는 <u>제3항</u>에 따라 불가피하게 계약의 방법(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)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발주계획품의서에 발주처가 승인한 하도급자 승인공문 또는 하도급자 목록 등의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.</p>
<p>부 칙</p> <p>1. (시행일) 이 절차는 2018. 1. 1부터 시행한다.</p> <p>2. (경과조치) 이 절차 시행일 현재 결재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절차에 따른다.</p>	